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815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일

제출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 등이 제출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수기연서 전면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과 의안처리 시스템 활용 등을 위해 기존 수기연서 방식을 전자·수기연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안을 의원발의안과 집행기관 등의 제출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의안 발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나. 전자·수기연서 사용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시행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을 각각 “발의 및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중 “한다”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생략)</p> <p>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u>제출</u>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u>제출</u>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u>한다</u>.</p> <p>⑤ (생략)</p>	<p>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발의 및 제출</u>----- ----- -----.</p> <p>④ ----- <u>발의 및 제출</u>----- <u>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